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마련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49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마련	2
2. 부칙	7
【참고자료】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Ⅲ. 검토의견

1.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마련

개정안은 유치원에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사람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항 및 별표 2).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u>정교사(1급·2급)·준교사</u>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u>----- -----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신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20 1518 384 1597">보건교사 (1급)</td><td data-bbox="384 1518 1396 1597">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td></tr> <tr> <td data-bbox="220 1597 384 1749">보건교사 (2급)</td><td data-bbox="384 1597 1396 1749">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td></tr> <tr> <td data-bbox="220 1749 384 1827">영양교사 (1급)</td><td data-bbox="384 1749 1396 1827">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td></tr> <tr> <td data-bbox="220 1827 384 1980">영양교사 (2급)</td><td data-bbox="384 1827 1396 1980">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td></tr> </table>		보건교사 (1급)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 (1급)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 (1급)	1.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 (1급)	1.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현행법 제20조제1항¹⁾은 유치원의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제22조²⁾에서는 교원의 자격으로 원장·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기준을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³⁾」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구분과 달리 현재 유치원에도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보건법」 제15조⁴⁾ 및 「학교급식법」 제7조⁵⁾에 근거를 두고 있음.

1)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4)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교직원 배치현황】

(2024. 4월 기준 직위별 교원수, 단위: 명)

구분	합계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 교사	보직 교사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간체 교사	전문 상담 교사	사서 교사
유치원	55,404	3,518	2,056	17	3,005	36,844	1,243	89	185	8,447	-	-
초등학교	196,598	6,136	6,282	440	40,970	108,838	6,047	5,139	4,448	15,832	1,731	735
중학교	114,780	3,011	2,731	275	26,487	49,478	2,432	2,300	1,002	25,080	1,581	403
고등학교	129,436	2,350	2,192	166	25,924	61,342	1,878	1,828	1,169	30,886	1,147	553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대해서 「유아교육법」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유치원에 두는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유치원에 두는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신설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⁶⁾

이는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5)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개정 2019. 12. 3.>

행령 제8조의27)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교사의 경우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아교육법」이 2004년에 분법(分法)되기 이전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두는 보건교사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 격 학 교 별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7)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배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격기준을 두어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유치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현장에서 운영해 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2004년 이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유아교육법」 제정(2004.1.29.)시 이를 명시하지 않아 누락된 사항으로,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와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임.

대한영양사협회는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해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이 2021년 1월 30일 시행되었으므로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2.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로 한다.

개정안 부칙은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대해서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고, 1급 보건교사 또는 1급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 경력이 필요하므로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수나 경력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경력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

< 국공립유치원(단설) 영양교사 배치현황(공동배치 포함, '24.3. 기준) >

(단위: 개소수, 명, %)

구분	국공립유치원 개소수	급식시설· 설비 ⁸⁾ 설치 국공립유치원 개소수	영양교사	영양사 ⁹⁾	소계	배치율
서울	48	44	20	24	44	100%
경기	165	140	45	72	117	84%
인천	19	19	6	8	14	74%
충남	30	30	7	23	30	100%
충북	27	26	8	18	26	100%
대전	12	1	1	0	1	100%
세종	43	43	2	41	43	100%
전남	28	28	0	24	24	86%
전북	33	31	14	16	30	97%
광주	13	11	1	7	8	73%
대구	22	22	3	15	18	82%
경북	22	22	1	14	15	68%
경남	47	47	0	25	25	53%
부산	33	9	4	5	9	100%
울산	12	12	0	12	12	100%
제주	0	0	0	0	0	-
강원	27	27	3	24	27	100%
계	581	512	115	328	443	87%

자료: 교육부

8)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9) 부 칙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현황(공동배치 제외, '24.9월 기준)¹⁰⁾ >

(단위: 개소수, %)

지역	원아 수 100~199명				원아 수 200명 이상			
	해당 유치원수	영양교사 배치 유치원수	영양사 배치 유치원수	배치율	해당 유치원수	영양교사 배치 유치원수	영양사 배치 유치원수	배치율
서울	187	10	52	33%	33	13	17	91%
경기	341	7	131	40%	122	9	108	96%
인천	81	17	12	36%	36	19	12	86%
충남	39	6	27	85%	17	10	7	100%
충북	25	0	19	76%	5	0	5	100%
대전	53	9	13	42%	13	4	8	92%
세종	-	-	-	-	-	-	-	-
전남	20	1	17	90%	9	2	7	100%
전북	36	8	13	58%	8	3	5	100%
광주	62	0	12	19%	18	0	15	83%
대구	82	20	56	93%	33	6	25	94%
경북	86	0	33	38%	17	0	16	94%
경남	76	40	0	53%	40	37	0	93%
부산	94	10	25	37%	27	6	18	89%
울산	40	0	12	30%	6	1	5	100%
제주	4	0	1	25%	6	3	3	100%
강원	29	0	15	52%	4	1	1	50%
계	1,255	128	438	45%	394	114	252	93%

자료: 교육부

10)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공립유치원 보건교사 배치현황('24.9.기준)¹¹⁾ >

시도	24학년도 법정정원(A)			2025학년도 배정정원 (B)	기간제 교원 (C)	부족정원 A-(B+C)
	유치원 수	36학급 이상 학교수				
서울	46	0	46	13	0	33
부산	33	0	33	4	29	0
대구	22	0	22	0	14	8
인천	19	0	19	2	0	17
광주	13	0	13	0	13	0
대전	12	0	12	0	12	0
울산	12	0	12	3	11	(2명 초과)
세종	44	0	44	0	0	44
경기	167	0	167	10	0	157
강원	27	0	27	0	0	27
충북	27	0	27	2	14	11
충남	30	0	30	6	24	0
전북	33	0	33	18	17	(2명 초과)
전남	28	0	28	1	20	7
경북	22	0	22	3	19	0
경남	47	0	47	6	26	15
제주	1	0	1	1	0	0
합계	583	0	583	69	199	319

주: 단설과 병설 구분 통계가 없어, 단설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가정으로 작성
자료: 교육부

11)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